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장수마을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충청남도 청양군

내 용

충청남도 청양군 ○○○○센터에서는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년 ○○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역말마을)’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7. 1. 1)」 제53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년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마을 대표 ○○○, 사업비 4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452,255원(873,710원(4. 21일), 578,545원(5. 17일))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 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청양군수는

[주의]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용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